

의안번호	2221507
의 퇴 인	이학영의원
회 답 일	2026.10.12.
추 계 번호	26D444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1조의3(지속가능성 공시기준)	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
		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, 전문인력의 양성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6항)	의무규정
2	안 제169조의3(지속가능성 인증기준)	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
3	제369조의3(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)	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제429조의4(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)	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1조의3(지속가능성 공시기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9조의3(지속가능성 인증기준)	
3	제369조의3(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)	
4	제429조의4(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)	

2. 상세 사유

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·개정 업무 위탁(안 제161조의3제3항 및 제5항)

-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·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유사사례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의 제·개정 및 해석·질의회신 업무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수행하고 있으며, 금융감독원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¹⁾
-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·개정·해석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KSSB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수탁기관도 한국회계기준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

1) 금융감독원이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 지출 예산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(총지출 예산의 10%)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을 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.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의 2026년 법정분담금으로 약 75.5억원(지출예산)과 약8.1억원(적립)이 편성되어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 범위, 업무량 및 그 비용 지원 주체 및 규모 등 지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2026년도 지출예산은 약 31억 4,800만원 수준임

[표 1]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출예산: 2025~2026년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5	2026
일반예산		3,092,360	3,147,667
	인력관리비	1,541,860	1,629,590
	연구관리비	1,095,210	933,750
	일반관리비	311,110	360,630
	예비비	144,180	195,487
	이자비용	—	12,690
	자본예산	—	15,520
총 지 출 (계)		3,092,360	3,147,667

자료: 한국회계기준원

□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 수립(안 제161조의3제6항)

-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, 전문인력의 양성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제정 업무의 위탁(안 제169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,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함

□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(안 제369조의3)

-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므로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지, 보조금 등을 지원할지 등 그 방식과 지원 규모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

□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(안 제429조의4)

-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징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위반 건수 및 과징금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assembly.go.kr